

태국헌법의 통치구조와 그 특성

류 시 조*

<목 차>

- I. 머리말
- II. 태국헌정사의 특성
- III. 태국의 정부형태
- IV. 태국헌법의 통치구조와 그 특성
- V. 맺는말

I. 머리말

태국은 쑤코타이 왕국(1238~1350), 아유타야 왕조(1350~1767) 튼부리 왕조를 거치면서 열강들의 압력으로 1855년에 영국과 보링조약을 맺고 자유무역항과 치외법권을 승인함으로써 국제무대에 등장하였다. 1932년 6월 24일 인민당이 무혈 쿠데타에 성공하여 1932년 12월에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입헌군주국으로 발족하였다. 이로써 태국에는 쑤코타이 왕국 이래 약 700년간이나 지속되어 왔던 절대군주제가 붕괴되었다.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이래 태국에는 모두 3명의 입헌군주가 즉위하다¹⁾. 헌정 시작된 이래 1997년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17회의 군사쿠데타와 15차례의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1) 1939년에는 국호를 시암에서 타이로 변경하였다.

2 比較法學 (第17輯)

헌법개정을 거쳐 지금의 현행 1997년 헌정 체제에 이르기 까지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였다.

현행 헌법은 상원을 국왕의 임명직에서 선거직으로 바꾸고, 하원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상원에 대하여 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의원후보자에 대한 군부의 거부권을 박탈하여 헌법의 민주적 개혁을 꾀하였으며, 또한 각료의 의원직 겸임을 금지하여 책임정치와 권력분립을 보다 강화하는 등 권력구조를 개편하였다. 또한 부정부패·정부고위관료에 대한 탄핵·대표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기본권보장 및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등 이전의 헌법보다 민주적인 요소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태국은 1932년 절대왕정이 붕괴된 이래 이전의 헌법체제보다 진전된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비교적 복잡한 헌법체제를 마련하게 되었다²⁾.

어느 한 국가의 통치구조의 특성을 살펴봄에는 능동적인 정치적 기관간의 권력의 역학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치구조와 그 특성을 고찰함에는 능동적인 정치기관인 집행부와 의회간의 권력적 구조와 특성은 그 통치형태의 성격을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특히 태국의 경우에는 입헌군주국인 관계로 국왕과 내각, 국왕과 의회, 내각과 의회와의 권력적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 통치구조의 특성을 일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태국의 규범상의 통치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민주적 정부형태에서 볼 수 있는 의회와 내각의 일반적인 권한이나 기능적인 사항은 가능한 배제하였다.

2) 1997년 태국 헌법은 13장 336개조 구성되어 있다.

II. 태국헌정사의 특성

태국헌정사는 모두 17회의 군사쿠데타와 15회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현행 1977년 헌법체제가 수립되기 까지 태국의 헌정사는 극심한 혼란의 연속이었고, 초기의 입헌주의적 정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태국의 15차례의 헌법개정의 특성을 나누어 보면 비민주형·반민주형·민주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 비민주형헌법은 군사쿠데타 직후 정치활동이 엄격히 금지되는 상황 아래에서 임명직 의원만으로 구성된 단원제 의회와 민주적 수상 선출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강력한 권한의 수상의 독재체제를 보장한 1959년·1972년·1976년·1977년 헌법체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반민주형헌법은 군사쿠데타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군부의 용인아래 의회는 선출직 하원과 임명직 하원으로 구성되어 문민과 군부간의 권력분점이 가능하도록 이원적 의회체제 아래에서 여전히 수상의 강력한 권한이 인정되는 1932년·1941년·1952년·1968년·1978년·1991년 헌법체제로서 앞의 비민주헌법에서 민주헌법체제로 가는 과도기적 헌법체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형 헌법은 양원을 모두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하여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군부의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며, 수상에 대한 보다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집행부의 책임정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문민통제를 강화한 1946년·1949년·1974년·1992년·1997년 헌법이 이에 속한다.

3) 변해철, 태국의 민주화와 1997년 헌법, 외대논집 18집, 9쪽 참조.

Ⅲ. 태국의 정부형태

1. 영도자적 입헌군주제

현대 입헌군주제에서 국왕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명목적이고 상징적이며 의례적 지위에 그치고, 국왕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또한 명목적이고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태국은 비록 입헌군주국이나 국가원수로서 위기 상황에서 헌법규범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 민주정체를 위하여 헌법규범을 보충할 권한을 가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헌정을 영도할 수 있는 지위에 선다(제7조). 따라서 태국의 헌법체제에서 국왕은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국군 통수권, 외교 사절 인준 및 임명권·사면권 등은 이른바 의례적이고, 형식적 권한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지위를 가진다. 태국국왕의 국가원수로서 이러한 헌법상의 권한은 헌법규범 이상의 정치적으로 실질적 권위를 가진다. 이는 헌법규범상의 제도적 권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왕의 전통적·도덕적·인격적·태국헌정사의 정치적 특수한 요인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태국 국민 90% 이상이 가 불교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종교국가라고는 할 수 없어도 국민에 대한 종교적 영향력은 규범상의 지위 이상의 정신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국왕은 불교신자이어야 하며, 불교의 수호자로 규정함으로써(제9조) 국왕은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한과 국왕 개인의 도덕적 절제와 미덕 같은 인격적 요소가 결합됨으로서 서구의 입헌군주에게 찾아 볼 수 없는 절대적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여 이른바 영도자적 입헌군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왕의 정치적 권위는 모든 국가권력과 사회권력을 영도하는 정신적 존재로서 태국의 역사적·문화적·환경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⁴⁾. 이러한 점에서 태국의 국

4) 변해철, 12쪽 참조.

왕의 헌법적 지위는 領導者的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이원적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적 요소

고전적 의원내각제하의 국왕은 국가원수로서 상징적 지위에서 의례적 권한만을 가지고,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은 수상이 행사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진다.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하여 성립되고 존속되며,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또한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제를 통하여 의회와 내각간의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고, 의회와 내각은 기능적으로는 권력을 분할하지만 각료와 의원의 겸직·집행부의 법률안제출권·각료의 의회출석발언권 등을 통하여 정치적으로는 공화와 협조의 관계를 유지한다.

현행 태국헌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인 국왕과 집행권을 가진 내각으로 이원화하고,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종속되고, 하원의 내각불신임권과 국왕의 의회해산권이 보장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간의 권력적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각과 하원의 법률안제출권이 보장되고, 각료의 의회 출석·발언권은 보장되어 공화와 협조가 보장된 등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왕에 대한 내각의 권력적 통제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또한 일반 행정사항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권이 불명확하여 국왕의 실질적 행정권행사가 가능하여 행정권의 이원화가 이루어지며, 의원과 각료간의 겸직을 금지하여 의회와 정부간의 권력의 공화·협력관계가 지양되는 등 순수한 의원내각제에 찾아 볼 수 없는 변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2) 이원집정부제적 요소

二元的 執政府制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으로 이루어

지는 이원적 구조로 대통령이나 내각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거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의 다수당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수상임명권이나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지는 등 대통령이나 내각의 수상도 실질적 고유권한을 가지며, 집행권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의 국가긴급권을 가지는데 반하여, 내각은 법률집행권 등 그 밖의 일반 행정권을 가진다.

태국헌법도 국왕과 수상 등의 내각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국왕이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의회가 내각불신임권을 가지며, 국왕은 의례적인 명목적 권한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 계엄 등 국가긴급권·외교·칙령·사면권·각료 등의 해임권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이원집정부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는 이론적으로 민주적 정통성을 가지는 대통령과 수상을 전제로 하는 공화제에서나 가능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국왕에게 외교·국방 등에 관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및 인사·행정 등에 관해 일정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은 민주적인 입헌군주제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헌법적 모델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1997년 태국헌법은 민주적 이원집정부제적 모델과도 구별된다.

이상으로 볼 때 태국헌법의 통치구조는 기본적 주요 골격은 의원내각제의 틀 위에 이원집정부제적 요소를 가미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원내각제의 변형모델로 개념 규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분석으로 생각된다. 비록 변형적 의원내각제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포괄적이라고 하더라도 1997년 태국헌법상의 통치구조를 단순히 변형된 의원내각제로만 분석하는 것은 현행 태국의 정부형태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곤란하다고 하겠다. 특히 태국헌법은 입헌군주제하의 정치모델이나 단순히 명목적 의례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권한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원수로서 뿐만 아

나라 행정권에 관해서도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아니한 다는 점에서 일종의 권위주의적 정부형태의 하나로서 二元的 領導的 議員內閣制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형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적 전통이 일천하고, 내용적으로는 규범적 요소 보다는 전통적 역사적 요소가 헌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후진적 정치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IV. 태국헌법의 통치구조와 그 특성

1. 국왕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

태국헌법상 국왕에 관한 사항을 기본권규정보다 앞서 제2장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왕은 태국의 헌법체제와 국가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태국에 있어서 국왕은 현대 입헌군주국가의 국왕과 같이 상징적·의례적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7조를 통하여 실질적 국가원수로서 大權(the prerogative)을 부여받아 국정을 영도하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오늘날 민주적인 정부형태의 하나로서 민주형 입헌군주제는 의원내각제를 기본적 골격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국왕은 국내정치에 개입하지는 않으며, 국가원수로서 상징적 지위를 가지고, 의례적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1997년 태국헌법상 정부형태는 비록 이전의 헌법체제와 달리 비교적 민주적 헌법체제이라고는 하나 통상의 민주형 입헌군주제와는 외교·국방 등의 대외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권 및 대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행사가 보장되고 있는 영도자적 입헌군주제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왕은 종교적으로는 불교도여야 하며, 동시에 佛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로서(제9조) 국왕의 행위는 법적으로 파오가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6조).

국왕은 하원의 재적의원 1/5 이상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지도자 혹은 이에 해당하는 정당이 없을 경우는 각료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소속 의원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원을 야당지도자를 임명한다. 이는 내각 불신임으로 국정의 공백이 생길 경우 국정의 안정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비내각제를 운영하기 위함이다(제120조).

국왕은 국가원수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의회·내각·법원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한다(제3조). 국왕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칙령을 발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221조), 국가원수로서 계엄령발포권(제222조)과 같은 대권을 가지며, 헌법상의 훈장수여권(제11조)·작위 및 훈장박탈권(제226조)·왕위계승법개정권(제22조)·의회해산권(제116조)·각료해임권(제117조)·강화 및 조약체결권(제224조)·사면권(제225조) 등에 관해서 일정한 경우 의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그 이외에 법률안거부권·군통수권(제10조)·추밀원구성권(제12조)·법률안거부권(제04조) 및 법률안공포권(제91조)·비상명령권(제218조)을 가진다. 그리고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전쟁을 선포하며 상원의 제청에 따라 오브르만을 임명하고, 인권위원회, 반부패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헌법재판소의 장 및 위원을 임명한다.

국왕의 권한행사에 관해 자문에 조언하는 헌법상의 기관인 추밀원의 대표를 임명할 뿐 아니라 추밀원의 구성원 18명 전원을 임명하며(10조), 추밀원 위원은 어떠한 정치적 견해도 피력할 수 없도록 하여(제12조)⁵⁾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왕의 권한행사에 대한 초당파적 중립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왕위계승에 관한 왕실전법(the Palace Law)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왕실의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국왕의 헌법상의 권력과 결합하여 권위주의화 요소를 내포하게 된

5) 추밀원 위원은 취임에 앞서 국왕에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해야 한다. “나는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헌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제13조)

다(제22조). 국왕이 궁전에 부재중이거나 국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국왕은 왕권을 대행할 섭정(攝政 : Regent)을 임명한다.⁶⁾

2. 수상 및 내각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

내각은 수상 및 행정을 담당하는 35인 이하의 각료로 구성되고, 수상은 하원의 임명제청에 따라 국왕이 임명하며, 각료는 하원의원 중에서 수상의 임명제청에 따라 국왕이 임명한다(제201조). 수상지명자는 하원의원의 1/5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여야 하며(제202조), 이에 실패할 경우 15일 이내에 최고득표자를 수상으로 임명한다(제203조).

내각의 국정에 관한 정책결정권에 관한 헌법상의 근거 없고, 이에 관한 사실상의 권한을 국왕이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각의 행정권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내각의 각료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에 관하여 행정집행권을 가진다. 각료는 그 직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내각의 정책일반에 관해서는 연대하여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212조). 각료는 수상의 조언에 따라 국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제217조), 내각에서 수상은 다른 각료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또한 국정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권에 관한 헌법규정이 없어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은 사실상 국왕이 행사하고

6) 의회 의장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6조). 국왕이 섭정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할 수 없을 때는 추밀원(the Privy Council)은 섭정에 타당한 인물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의회의 승인을 득했을 때 의회 의장은 섭정이 임명되었음을 국왕의 명의로 공포한다(제17조). 그리고 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산됐을 경우 상원은 의회를 대표해서 이를 추인해야 한다(제17조).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섭정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추밀원 원장이 임시 섭정이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밀원 원장이 권한대행을 했을 때는 추밀원 원장은 원장으로써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추밀원은 임시 원장을 선택해야 한다(18조).

있다(제7조).

내각은 법률안 및 예산안 제출권을 가지며, 각료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며, 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의회에 출석의무를 진다(제210조). 또한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정책설명 의무를 진다(제211조). 수상은 국익이나 공익에 관한 주요사안에 대하여 내각의 결의를 거쳐 양원의 의장에게 국민투표에 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제214조). 각료는 수상의 해임·하원의 임기만료나 해산 혹은 사임으로 해임된다(제215조). 각료는 수상의 조언에 따라 국왕에 의하여 해임된다(제216조). 국가 공공의 안전 경제안정 재해예방을 위해 국왕은 각료회의를 거쳐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非常命을 발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의회의 심사를 얻어야 하며, 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그 효력은 상실되고, 그 효력은 소급되지 아니 한다. 상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비상명령은 하원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경우 그 효력은 계속된다(제218조). 재적의원 1/5이상 상하의원은 양원의 의장을 통하여 비상명령의 위헌여부심사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의결은 연기된다(제219조). 각료는 법령이나 포고가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서의무를 진다(제232조).

3. 의회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

태국의 의회도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권력통제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나, 단일 입헌군주제국가로서 공화제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복잡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태국 헌법은 의원내각제국가로서 당연히 의회의 조직도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이며, 하원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제91조), 상원의장은 의회의 부의장이 된다(제92조). 양원의 의원은 모두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에 한하여 피선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제125조, 206조) 근대 초기 고전적 의

회에 있어서와 같이 의회지도자를 정치엘리트로 충원하도록 하였다. 이는 의회의 민주적 정통성을 약화시켜 국민주권의 이념을 약화시키고, 의회권력을 권위주의화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상하 양원의 의원은 겸직할 수 없으며(제96조), 의원은 사임 파면 자격상실 등으로 의원직이 박탈당한 때에는 재적의원 1/10의 찬성으로 의장에 탄원할 수 있으며, 의장은 헌법 재판소에 회부한다(제96조). 양원의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149조). 양원의 의원은 취임선서를 하며, 각원의 의장과 부의장은 각원의 결의에 따라 국왕이 임명한다(제151조). 의원은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을 가지며(제157조, 제165조), 회기는 150일의 정기총회와 120일의 입법통상회의가 있으며, 국왕은 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회기 중에 결의로써 정회할 수 있다(제160조)⁷⁾. 또한 양원은 합동회의를 통해 국왕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하여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도록 하였으나(제94조), 법안 재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여 의회의 법안심사권에 대한 국왕의 정치적 지도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원은 임기 4년의 100인의 비례대표의원과 400인의 지역구의원으로 구성된다(제98조, 제104조)⁸⁾. 하원의원은 각료 등의 공직을 겸할 수 없다(제11조). 특히 스님·수녀·신부·목사와 같은 종교적 지도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투표권을 봉쇄함으로써 의회권력을 철저히 세속화하고 있다(제106조). 국왕은 하원 총선거를 위하여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제116조). 하원의원이 임기만료나 해산 이외의 사유로 공석이 생겼을 경우, 전국구 비례대표의원이 꺾어진 경우는 정당명부 순위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하고, 지역구 의원이 꺾어진 경우는 45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

7) 국왕은 의회를 소집을 할 수 있으며, 회의를 개회 및 정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161조), 국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162조). 국왕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는 회의 연장이나 정회는 국왕의 칙령에 따른다(제164조).

8) 제106조 다음에 열거한 사람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스님·수녀·신부·목사 (3) 법원의 판결로 구속 중인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을 상실한 자.

하여야 하며 단, 잔여 임기가 180일 이내 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제119조). 하원과 내각은 법안 및 헌법개정안의 제출권을 가지며, 財政法案은 수상의 승인을 얻어 하원의원이 먼저 하원에 제출한다(제169조, 제172조). 특히 하원의 각료점임을 금지함으로써 집행부간의 권력적 공화와 협조를 약화시키고, 내각의 의회로부터 독립과 책임을 강화시켰다.

상원은 지역 선거구(Changwat)별로 1인 이상을 선출하는 증거구제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6년의 200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궐원시 이를 충원하지 아니 한다(제121조). 그리고 상원의 의원은 정당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여 상원의 정당국가화경향을 제한하여 상원의 당파성을 배제하여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인 정당정치를 약화시켰다. 이는 하원과 달리 상원의 초당파적 입장에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왕의 초당파적 지도력과 함께 권력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보다는 정치적으로 권력의 감독과 통합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상원의원 보궐선거는 궐위된 때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시하며,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제134조) 의회 운영의 효율성의 도모하도록 하였다. 상원은 하원 혹은 상원의 재적의원 1/4 이상·유권자 5만 이상의 탄핵소추에 따른 탄핵결정권을 가진다(제303조, 304조).

상하의 양원은 내각의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제218조) 등의 헌법에 따라 행정권을 통제한다(제182조). 의원은 행정각부의 직무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⁹⁾. 하원의 수상 및 각료에 대한 불신임은 은 재적의원 1/5의 찬성의 제안하고, 재적의원 1/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제185조·제186조).

9) 실질적 국가이익이나 국가안전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제183조).

V. 맺는말

현행 1997년 태국헌법은 이전의 헌법체제와 비교해서 볼 때 군부의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권력적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비교적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헌법개정과정과 개정내용이 비교적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상원에 대한 군의 통제권을 박탈함으로써 의회권력의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여 실질적 입법기관으로 면모를 일신하였다. 또한 1997년 태국헌법은 의원내각제 헌법체제이면서도 의원의 각료 및 정부 고위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공화와 협조기능 보다는 독립 및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태국 국왕은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위급시에 국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왕의 내각에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케 하는 등 국왕은 그 권한을 정치적으로 매우 절제 있게 행사함으로써 인하여, 헌법현실에서 국왕은 정치적으로 헌법규범 이상의 권위적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태국 헌법은 의원내각제란 개념적 틀을 벗어난 일종의 국왕의 영도자적 지위가 강조된 일종의 변형된 영도자적 의원내각제라 할 수 있다.

<Abstract>

A Characteristic of Governmental System of
Thai Constitution in 1997

Ryu, Si-Jo

Thailand is a constitutional monarchy where the king has many prerogatives as Head of the State. Between 1932 and 1997, Thailand had 15 constitutions and 17 military coups. On 2 July 1995, Thailand, after having abolished absolute monarchy 60 years ago, had the first "real" parliament elections where the military had no right to veto successful candidates. The latest constitution was adopted by parliament in 1997 after extensive public consultation. It mainly tries to get rid of vote-buying and also introduce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or some seats, establishes an independent election commission. The new constitution further requires all cabinet members to resign their parliamentary seats. Senators will be elected rather than royally nominated. Thai government system in 1997 is fundamentally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but it's transformational dual one. Especially we can conclude that a characteristic of governmental system of Thai Constitution in 1997 is a leading constitutional monarchy where King leads substantially general affairs of state.